

	취·창업 지원센터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9		
		제정일	2019. 04. 12.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1/2	관리 부서	산학협력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및 교직원의 취·창업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취·창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취·창업 활동이라 함은 학생들의 취·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직원의 창업 능력 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취·창업 지원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취·창업 활동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센터이다.

제3조(직무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창업 지원업무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
2.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및 관련사업 운영
3. 취업통계조사
4. 취·창업 지원사업 성과 평가
5. 취·창업 지원사업 개선안 도출
6. 기타 취·창업 지원사업

제4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운영위원회,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본 센터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취·창업 지원사업 전반의 사항과 센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고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취·창업 지원사업 기본계획
 2. 취·창업 지원사업 운영결과

	취·창업 지원센터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9		
		제정일	2019. 04. 12.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2/2	관리 부서	산학협력처

3.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외협력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지원)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정에 따라 지원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

1. 취·창업 지원 활동에 필요한 재정
2. 창업으로 인정되는 학생의 휴학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점인정
3. 창업강좌 학점교류
4. 창업 장학금
5. 기술개발 및 특허, 연구결과 등으로 인해 창업을 인정받은 교원의 휴·겸직

제9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취·창업 활동 지원 규정(3-4-15)」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